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폐암

직업성 암 ②

❖ 지하상가의 석면 분진과 경비원에게서 발생된 폐암

- 사건번호 95구138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1996. 2. 22.),
판사 권성, 곽종훈, 김형진
- 판결주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1. 사건의 경위

- (1) 양○○(지하상가 경비원): 폐암에 걸려 1992. 11월 말경 사직한 후 1993. 11. 24. 사망
(2) 망인의 처인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

소장(1995. 5. 1.자로 그 권한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승계되었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노동사무소장은 1994. 7. 15.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2. 사실관계

- (1) 위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중장비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1973년경부터 약 1년 동안 청계종합오수처리장에서 폐건물의 집단철거작업에 종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건

물자재 중에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 그 철거 당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여 위망인에게 흡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 (2) 그 후 위 망인은 1983. 4. 10. 경 위 00개 발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던중 위와 같이 1992. 11. 말경 사직하였는데 그동안 위 망인의 근무지인 위 지하상가 내의 공기 중에는 석면분진이 약 0.02 내지 0.10개/cc 정도의 농도로 존재하였던 바. 이는 그 최고치가 한국 노동부의 허용치인 2개/cc에 미달되기는 하나 미국 노동성의 허용치인 0.1개/cc에 도달한데다가 미국 환경보호처의 허용치인 0.01개/cc를 초과하는 농도이다.
- (3) 한편 위 망인은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나 1987년경 당뇨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금연을 하여 왔고, 1992년도 건강진단 결과 당뇨외에 간장, 신장 등에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현재까지 위 지하상가 내의 근무자들중 폐암에 걸린 사람은 위 망인 외에는 없다.
- (4) 통상적으로 폐암의 주된 발생원인은 흡연으로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발생원인으로는 석면이 있는데 석면의 경우 노출시로부터 약 15년 이후에 발생하되 20년 내지 40년 후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흡연과 석면은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

이므로 그 재해가 발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94누2565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91누10022 판결 등 참조).

참 고

대법 1992. 2. 12. 91누10022, 제2부 판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

근로자가 1969. 5. 입사, 1970. 12. 30. 경부터 회사 제판실에서 근무하던중 1984. 2. 15.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음. 제판실에서는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는 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부서를 옮긴 후의 증세의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위 망인이 비록 평소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었고 상당기간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1973년경부터 약 1년 동안 폐건물의 집단철거작업중 석면분진에 노출된데 이어 1983. 4. 10.경부터 1992. 11.말경까지 약 10년의 장기간 동안 지하상가에 근무하면서 또다시 석면분진에 노출되었고 위 석면분진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며, 위 망인이 당초 폐암의 증세가 없었는데 위 지하상가 근무중 폐암을 앓게 된 이

상 비록 폐암이 석면 외에도 여러 원인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폐암 증세는 위와 같은 직업이나 근무중 노출된 석면분진에 의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폐암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직업성 암 ③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한 도장공의 폐암 발생

- 사건번호 95구12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결선고 대법원(1996. 2. 13), 대법관 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 판결주문 상고기각(상고인: 근로복지공단)

1. 사건의 경위 및 판결 이유

- (1) 임OO(○○중공업 특사부 도장공), 1993. 11. 19. 폐암으로 사망
- (2)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

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원심판결: 분산고등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 폐암의 발병원인 등)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체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추단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4) 직업성 암**◆ 강관제조 공정에서의 쟁가루, 오일흄, 바니쉬, 신나에 의한 폐암 발생**

- 사건번호 95구37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결선고 대법원(1996. 2. 23.),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 판결주문 상고기각(상고인: 근로복지공단)

1. 사건의 경위 및 판결 이유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이○○가 소외 ○○제강(주)의 강관 제조 공장에서 약 20년 간 근무하면서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쟁가루와 오

일흄, 바니쉬, 신나 등 가스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것이 흡연외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